

企圖特輯解說

改正 商標法 解說(1)



金 惠 賴
<特許廳 法務擔當官>

■ 目次 ■

- I. 法改正의 背景
- II. 法改正의 主要內容
- III. 맷는말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다음號>

I. 法改正의 背景

政府는 1986. 12. 31 法律 第3892號로 商標法을, 1987. 5. 1 大統領令 第12150號로 商標法施行令을 改正하여 施行하고 있다.

이번 商標法 改正是 同日字로 改正公布된 特許法의

改正斗 步調를 맞추어 改正한 것이다.

世界經濟의沈滯局面이 長期化되고 또한 國際競爭이 燥烈化됨에 따라 國際貿易環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 나라의 最大交易相對國인 美國의 境遇 달러貨의 바닥을 모르는 下落, 貿易收支赤字가 1,600億弗을 넘어서는등 世界經濟의 基軸을 흔들것과 같은 不荒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日本을 비롯한 臺灣이나 香港등 國家等의 國際貿易에서의 比重은 相對적으로 점차 커짐에 따라 이들 國家에 대한 先進諸國의 通商壓力은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加重되고 있었는바 특히 美國의開放要求는 우리 經濟에 致命打를 加할 程度로 거센 것이다.

輸入自由化品目의擴大, 關稅率의引下, 知的所有權의保護強化(著作權의保護, 物質特許制度의導入), 保險市場의開放, 商標導入의自由化등등, 거의 全產業分野에 걸쳐開放을要求한 美國의對韓通常壓力은 實際로 '84美通商關稅法第301條에 의한 調查權의發動(美通常代表部(U.S.T.R)調查團의來韓調查), 國際貿易委員會(I.T.C)調查團來韓調查 및 Dumping判定, 一般特惠關稅(GSP)第2期延長法에 의거한 GSP受惠國의 美國知的所有權保護程度에 따라當該國에 대한 美國內로의輸出品의 GSP受惠의 運轉化, 商標偽造團束法의罰則強化 및 美議會에서의數많은對韓通商報復法案의提出등등, 우리의 貿易環境을 어렵게하는措置등을現實에 옮김으로서 壓力의強度를 더욱 높혔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政府는各分野에 걸쳐 幅闊은開放化를推進하였는바 그原所有權分野에서는 物質特許制度의導入을비롯하여 이미 86. 7. 1外資導入法施行令을改正하여 技術導入를隨班하지 않는單純한商標도導入할 수 있도록한自由化措置에相應하는商標法上의商標使用權設定의自由化, 著名商標의偽造, 模倣등의防止를위한不正競爭防止法의改正등을推進하였다.

이번 商標法改正의 主要背景은 바로 이러한 國際貿易環境에 의한開放化政策의一環으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冷嚴한 國際社會에서 어느 한쪽만의一方의인 利益, 即自己의 利益만을追求하는 것이 더불어 살아야하는 國際社會의一員으로서 바람직한姿勢는 아니라고判斷될 뿐만아니라開放化措置를斷行함으로서 國際間의 貿易磨擦을 줄이고 우리가目標로하는持續의in輸出伸張을 꾀함으로서 國家利益을極大화할수 있다는 次元에서 볼때 더욱 바람직하다고判斷되어 本法을改正하게 된것이다.

또한 우리의 技術水準이나 經濟規模, 國民意識水準에서 判斷하여 볼때도 過去와 같은 弊點이고 無批判의 外製商品, 外國商標의 選好와 같은 國民意識의 단계도 지났다고 判斷되었기 때문이다.

II. 法改正의 主要內容

이번에 改正된 商標法의 主要內容은 이미 法改正의 背景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商標導入의 自由化라고 볼수있겠는바 他人의 登錄商標를 使用하고자 할 境遇에는 商標通常使用權을 設定하여 使用하게 되는데 改正前의 商標法(以下舊法이라 한다)에서는 商標通常使用權設定은 事前要件으로 “指定商品의 品質의 同一性이 保障” 될 때에 限한 境遇에만 可能하도록 되어 있어 他人의 商標使用이 平常히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이 要件을 刪除하고 指定商品에 대한 品質의 同一性維持에 관한 責任은 商標權者와 使用權者 即當事者들의 自律에 의하도록 使用權設定(商標導入)을 自由화하였으며, 다음은 舊法에서는 通常使用權이라는 用語를 使用하였으나 商標法의 諸規定으로 볼때 “通常使用權”이라는 用語로 使用하는 것도 不合理한 點도 있어 “使用權”이라는 用語로 變更하였고, 商標使用權設定의 自由化에 따라 發生될것으로豫測되는 不作用을 防止하기 위하여 使用權取消審判制度를 新設하고, 罰則을 現實化하였으며 其他不合理한 規定 및 字句들을 整理하였다.

以下 舊法과 對比하여 改正法內容을 說明하고자 한다.

[1] 通常使用權 用語의 變更

이번 改正法에서는 舊法에서 使用하든 “通常使用權”이라는 用語를 通常이라는 말을 뺀 “使用權”이라는 用語로 바꾸었다.

原來, 通常使用權이라함은 專用使用權에 對稱되는 概念으로 特許法에서 使用하는 通常實施權 및 專用實施權과 같은 關係로 理解할 수 있다.

專用使用權이란 그 權利를 自己 혼자서만 使用할 수 있는 獨占的 使用權과 다른 사람이 그 權利를 使用할 때 이를 使用하지 못하게 하는 排他的權限을 갖는 權利인데 反하여 通常使用權은 專用使用權과는 달리 自己가 設定의 範圍내서 單純히 使用만 할 수 있는 權利이자 自己 혼자만이 獨占的으로 그 權利를 使用할 수 있다든가 또는 他人이 使用하는 그 權利를 使用하지 못하도록 하는 排他的 權利를 갖는 것은 아닌 것이다.

우리 나라 商標法은 外國의 境遇와는 달리 專用使用權制度는 없고 通常使用權制度만 採擇하고 있다.

그러나 舊法下에서의 通常使用權을 關聯規定에 비추어 볼때 그 性格이 明確하지 않아 誤解되거나 잘못認識될 念慮가 있었다.

即 通常使用權은 위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自己가 그 權利를 單純히 使用할 수 있는 權利임에도 法第30條(權利侵害禁止等의 請求), 第36條(侵害로보는 行爲), 第37條(損害賠償의 請求)등 原商標權者나 專用使用權者만이 行使할 수 있는 權利들을 通常使用權者도 行使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舊法第31條 第3項). 이러한 規定의 内容으로 볼때에는 우리 나라의 通常使用權者는 實際上 專用使用權의 性格을 強하게 포함하고 있어 專用使用權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規定에도 不拘하고 舊法은 通常使用權이란 用語를 使用하고 있고 實際上 通常使用權만을 認定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專用使用權의 法規定의 内容에 맞추어 通常使用權이라 하지 말고 專用使用權이라고 하면 어떻겠는가?

專用使用權이라하면 앞에서도 說明한 바와 같이 權利者(專用權者) 한 사람 以外에는 使用權設定을 할 수 없고, 商標權者와 專用使用權者 當事者間 特約이 없는 限 商標權者自身도 그 商標權을 行使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舊法 第31條 第1項에서는 “通常使用權者는 登錄의 範圍內에서 그 登錄商標를 商標權者와 같이 使用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지다”라고 規定함으로서 商標權者도 通常使用權者도 그 商標權을 使用할 수 있는 權利를 갖는 것으로 規定하였다.

따라서 本 規定을 檢討하여 볼때 條文中 “商標權者와 같이”라는 表現이 “商標權者와 같은 同一한 地位”에서라는 것을 뜻하는지 또는 “商標權者와 同時”에라는 뜻인지는 解釋上 여지가 있으나 어떻든 同一한 地位에서만 同時에서만 獨占排他的 專用使用權으로 보기는 어렵고 通常使用權의 性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實際로 우리나라의 通常使用權은 專用權者 한 사람이나 아닌 여러 사람에게 使用權을 設定하고 또 商標權者도 權利를 行使하고 있으므로 通常使用權임에 틀림없으나 以上에서 言及한바있는 여러 規定들에 의하여 真正한 意味의 通常使用權도 또 專用使用權도 아닌 折衷式 혹은 混合式使用權으로 運營되어 왔으므로 이번 機會에 通常이라는 修飾의 말을 刪除하여 “使用權”이라고 함으로서 用語의 法規定과의 不一致에서 나오는 解釋上の矛盾點을 解消하였다.

[2] 商標 使用의 自由化(使用權設定의 自由化)

이번 商標法改正에서 가장 important한 部分이 바로 商標 使用의 自由化措置라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舊法에서는 商標使用權設定을 위하여 “指定商品의 品質의 同一性保障”을 事前要件으로 하였는바 이는 그 당시 우리나라의 實情에서 產業政策의 으로 判斷하여 取하여진 制度라고 보여지며 오늘날의 現實 即 自由化,開放化의 環境에서는 舊法의 要件을 고집하는 것보다 自由化 및開放化政策에 順應함으로서 產業發展과 經濟發展을 促進할 수 있다는 判斷에서 商標使用權設定을 自由化한 것이다.

다만 使用權設定의 自由化에서 오는 不作用도 想定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事後管理規定을 新設하여 自由化,開放化에서 오는 商品의 品質問題, 消費者保護問題등에 對應할 수 있도록 하였다.

指定商品의 品質의 同一性 保障要件 削除

舊法 第29條는 通常使用權은 指定商品의 品質의 同一性을 保障하는 것이라고 認定될 때 通常使用權設定登録을 하도록 하고 (同條 第3項), 指定商品의 品質의 同一性保障 認定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同條第4項)라고 規定하여 그 認定範圍를 施行令에 委任하였는바 商標法施行令은 第7條에서 指定商品의 品質의 同一性 認定의範圍를 다음과 같이 定하였다.

① 外國人投資, 技術導入 또는 技術用役등에 있어 商標使用을 包含한 商品 또는 技術用役등에 관하여 主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投資企業體와 그 投資에 의하여 設立된 企業體相互間 또는 技術導入契約當事者間 認可期間이 滿了된 경우에 있어 당해 外國人投資· 技術導入 또는 技術用役등에 의한 商品 또는 技術用役등을 繼續하여 生產 또는 營爲하는 때에 當該商品 또는 技術用役등을 管掌하는 主務部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도 포함 같다.

② 商品 또는 營業에 관하여 資本을 出資한 企業體와 그 出資의 納入을 받은 企業體相互間, 다만 個人相互間에 資本을 出資하는 境遇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中小企業系列化促進法에 의한 母企業體와 當該企業體相互間.

④ 輸出促進을 위하여 主務部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企業體相互間.

⑤ 主務部長官이 商標使用을 包含하여 製造許可를 한 商品으로서 主要性分의 原料供給을 받는 者와 그 原料를 供給하는 者相互間.

등 5가지 認定範圍를 規定하고 있다.

原來 使用權設定은 権利者와 使用하고자 하는 者와의 私的 契約行為로 이루어지는 即 特許權의 境遇와 같이 通常實施權設定이나 專用實施權設定 契約처럼 當事者의 自由意思에 依하여 設定되는 것이 原則이며 또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舊法은 商標使用權設定을 特許權의 實施權처럼 當事者간 自由契約에 맡기지 않고 위에서 說示한 것과 같은 施行令에서 規定하고 있는 5가지 要件中 어느 한 要件에 該當하여야만 商標使用權을 設定할 수 있도록 하였다.

商標使用權設定의 境遇 왜 이처럼 어려운 要件을 規定하여 施行하여 있는가?

이 点은 앞에서도 이미 言及한바와 같이 產業政策의 次元에서 考慮된 것이라 判斷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改正前 外資導入法施行令 第24條가 單純한 商標나 意匠만의 導入을 禁止한 것도 바로 같은 脈絡에서理解하여야 할 것이다.

一般的으로 特許權에 設定된 專用 또는 通常實施權은 그 特許發明의 實施를 通하여 그 特許權의 内容으로 되어있는 技術이 現實의 으로 實施됨으로서 實施權者를 通하여 새롭고 進步된 技術의 移轉이 可能하므로 技術開發이나 經濟發展에 直接의인 寄與를 하게 된다.

따라서 外國의 進步된 技術에 대하여는 必비한 Royalty를 支拂하면서도 이를 導入하여 낙후된 產業과 經濟開發을 促進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商標의 境遇에는 特許權과 같이 直接의인 技術移轉등의 效果를 期待할 수는 없다.

商標權은 特許權과 같이 直接 技術에 關聯하여 権利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技術과는 관계없는 文字·圖型·記號등의 標章에 주어지는 權利로서 特許權과는 產業發展에 寄與하는 役割이 根本의 으로 相異한 權利이다.

自他商品 識別機能, 商品의 出處表示機能, 商品의 品質保證機能등 機能을 갖고 있는 商標權은 商標權者が 그 商標을 長期間 使用함으로서 그 商標에 營業上의 信用을 代體시킴으로서 그 商標가 갖는 顧客吸引力를 利用하여 市場의 擴大量 圖謀하고 利潤을 追求하는데 寄與하게 되며 그렇게 됨으로서 그 商標을 使用하고자 希望하는 者가 나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商標使用權이라는 制度가 처음으로 創出되는 動機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通常使用權을 認定하게 될 경우 商標權者の 商品과 通常使用權者の 商品의 品質이 서로 相異하게

되어品質을保證할수 없게 될수있고 따라서需要者에게不測의 損害를 입힐 경우가 發生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우이 使用하고자하는 商標가 外國商標인 경우에는 國民意識 및 國內產業에 미칠 영향등 여러가지면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技術이 뒤떨어지고 產業이 落後되었든當時는 使用權設定을 法의一般的原理에 따라 商標權者와使用者間當事者의自由契約에 맡기게 될때 發生될 여러가지 逆作用을 念慮하여 通常使用權設定要件을 嚴格하게 规定하였다고 判断된다. 이는 國民의外製選好思想을 부채질하여 奢侈, 虛飾의 風潮만을 助張함으로서 國內產業의發展은 커녕莫大한外資의浪費등으로經濟는 주름살만 더 늘어나는 한편 國民意識을 痘瘍케하는結果만을 가져올 것으로 判断되었기 때문에 商標使用權設定에 대하여는當事者間自由契約이 아닌法적으로定하는一定要件에該當할境遇에만 使用權設定을認定함으로서 國內產業의發展과消費者를保護하려고 하였든 것이다.

實際로 몇年前까지만 하여도 우리의製品이 外國에輸出되고 또한製品의品質을外國에서認定받고 있는 데도無條件外製만을選好하는傾向이 우리社會를風靡하고 있었다.

國民들의信仰같은外製選好風潮는外來語表記商標만附着된것이면偽偽造品인지模模造品인지가리지않고選好하든때를記憶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國內產業의保護등次元에서認定되었는商標導入의抑制는 우리經濟의急速한發展, 國際貿易社會에서 차지하는比重이 커짐에 따라 우리의交易相對國으로부터 오래전부터開放要求를 浸疫없이 받아왔었고 마침내는 貿易報復의形態로發展됨으로서우리도開放化體制를 移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政府는外資導入法施行令에서技術導入을隨班하지 않는單純한商標만의導入을認定치않은規定을技術導入과 관계없이單純한商標만의導入도可能(단, 技術代價에 대한租稅를 免除받지 않을 경우)하도록 관계규정을改正하여 86. 7. 1부터施行함으로서새로운開放化時代의幕을 열었고 이번에商標法도이와같은政府施策에 맞추어商標法 및商標法施行令에서規定하고 있던 관련規定을削除하는등 관계규정을改正함으로서명실상부한商標使用權設定(商標導入)의自由化를期하게 되었다.

競爭時代에는競爭原理가通用되어야 하며政府의지나친保護는結局產業의發展을阻害하고外國으로

부터의開放要求등強한反撥을 불러이르기는結果를가져오게 된다.

產業이幼稚한段階에서는不可避한일이라하더라도國際社會에서당당히어깨를겨루고競爭할수있는 단계에서까지도 이를固執함은 협명한處事는아닐 것이다.

商標導入의自由화即商標使用權設定의自由化措置에따라商標權者나商標使用權者는모두商標및商品品質에대한management를徹底하여經濟發展에이바지하고消費者를保護할수있도록最善의努力를다하여야 할 것이다. <계속>

(案)發明振興事業(内)

特許廳과本會는發明振興事業을積極推進하여登錄된權利가企業化됨으로써技術革新을바탕으로國家產業發展에寄與하고자 다음과 같은事業을展開하고 있으오니많은參與바랍니다.

◎事業內容◎

- ◎發明獎勵館의發明品無料展示 및企業化旋幹
- ◎優秀發明試作品製作支援
- ◎優秀發明者,發明有功者,優秀特許管理企業選定表彰
- ◎海外展示出品의積極支援
- ◎海外出願에對한補助金支援
- ◎優秀發明의金融支援推薦
- 創業資金支援推薦(45歲未滿)
- 企業化資金投·融資推薦
- 發明의保護 및紛爭仲裁
- 發明特許品流通販賣展示會開催
- 企業과發明人結緣(申請接受)
 - 姓名 및住民登錄番號
 - 住所 및電話番號
 - 公告,登錄番號 및日字
 - 發明考案의명칭을 적어보낼것.
- ※ 기타 자세한 것은 本會發明振興部(557-1077 ~8)로 문의 바랍니다.